

영등포구의회
제16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김화영 의원 외 4인 발의】



2011. 9. 19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80호로 2011년 9월 15일 김화영 의원 외 4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2011.7.14 개정·공포(2011.10.15 시행 예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신설하고, 회의 규칙 중 필요한 별지서식을 신설하며, 그 밖에 의회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상황 등을 대비하여 임시회의 경우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4조)
- 나. 임기 초 의원 선서 조문 중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을 「국회법」 등을 참고하여 수정함.(안 제5조)

- 다. 「지방자치법」 개정 및 위임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예고’에 관한 사항 신설함.(안 제19조의5)
- 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 반영.(안 제24조의3)
- 마.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개선하고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함.(안 제32조의2제2항)
- 바. ‘구정질문 요지서 송부시한’을 기존에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를 ‘48시간 전까지’로 변경하고, ‘구정질문 요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설함.(안 제65조의2제2항)
- 사. ‘서면질문서’ 및 ‘서면질문 답변서’을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으로 정함.(안 제66조제1항 및 제2항)
- 아. 윤리심사의 특성에 비추어 의원의 자격심사 및 자격상실의결에 관하여 다루는 제7장과 구별하고, 제9장 징계에 관한 부분으로 이관하고자 윤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70조)
- 자. 공개된 회의 방청을 허가 받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함.(안 제77조제2항)
- 차. 회의규칙 ‘제9장 징계’ 부분에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9조~제83조)
- 카. 지방의회운영과 관련된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따라 기존에 초일을 산입하도록 한 규정이 맞지 않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함.(안 제8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65조제2항,
제66조의2, 제71조

5. 검토의견

- 이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1. 7. 14일 개정되어 2011. 10.15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4조에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하여야 하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상황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임시회의 경우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
- 안 제5조에 의원 선서문을 「국회법」 등을 참고하여 자연스런 표현으로 문구를 수정함.
- 안 제19조의5에 조례안 예고 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제외한 우리구의회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으로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등을 게시판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24조의3에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신설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에 대하여 위원회의 안전심사 절차를 준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 안 제65조의2제2항을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준비 등을 위하여 국회와 서울시 및 일부 타 구의회 사례에 따라 ‘구정질문 요지서 송부시한’을 기존의 질문시간 ‘24시간 전 까지’를 ‘48시간 전까지’로 개정함.
- 안 제77조제2항에 공개된 회의 방청을 허가 받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함.
- 안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에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안 제84조를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운영과 관련된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하므로 기존에 초일을 산입하도록 한 규정을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함.
- 별지 1호에서 4호까지에 ‘5분 자유발언 신청서’, ‘구정질문 요지서’, ‘서면질문서’, ‘서면질문 답변서’ 서식을 정하여 신설함.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현재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과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입법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우리구의회 회의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우리구의회에 대한 주민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사항은 오자와 띄어쓰기를 바로 고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바로고친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된 법체계나 자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